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1. 7.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1. 기업성장투자업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용어 정의 .....	1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허용 .....	3
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대출 허용 .....	5
4.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 .....	7
5.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정의 등 .....	8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상장유예기간 허용 .....	10
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요건 관련 .....	12
8.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인가요건 .....	14
9. 기업성장투자기구에 대한 일반 운용규제 배제 .....	18
1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관련 .....	20
1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기타규제 관련 .....	22
1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제재 관련 .....	24



#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용어 정의(안 제9조 제30항및제31항)

##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 및 기업성장집합업자에 대한 정의 필요

##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업 중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사례 [별첨]

※ 참고 조문 (신설내용 밑줄)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㉔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㉕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별첨)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사례

- (배경)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하 ‘BDC’)는 중소기업,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폐쇄형 투자회사의 일종
  - ‘70년대 신용위기로 소규모 성장기업으로의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일반인들의 벤처기업 투자수단을 제공
- ⇒ ‘80년 소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투자기구로서 폐쇄형 투자회사인 BDC를 도입
  - \*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
- (내용) 벤처투자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
  - 공모(IPO)·거래소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비상장 기업 등 투자기업을 발굴·확정
  - 자금공급·경영지원 후 투자기업의 가치증대 이익을 수익으로 향유
    - \* 투자자금을 받아 예치·신탁한 상태에서 약정 기간내 투자대상기업 확정 실패시 BDC를 청산하고 투자자금 반환
- (규제) BDC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적격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해당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격자산 외 투자 금지
  - (투자)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시총 2.5억\$미만)의 증권\* 또는 대출
    - \* 어음, 주식, 채권, 채무증서, 이익참가부 증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개념
  - (차입한도) 200% 레버리지(총자산/총부채) 한도로 차입을 허용
  - (보수) 스톡옵션·이익배분제·성과보수 등 성과연동형 보수를 허용

##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허용(안 제8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

###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83조제1항은 공모펀드의 차입을 원칙적 제한
- 그러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차입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
- \* 혁신·벤처 투자에 특화된 펀드로 여타펀드와 투자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해외 BDC 도입례 등에서도 차입이 허용되고 있음

###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전차입을 허용

\*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 등으로, 法 제229조·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

- ①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② 시가총액 2천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 ③ 既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 (②,③의 경우 펀드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 단,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차입한도를 제한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가능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고 조문 (신설내용 밑줄)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4.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
2. 제1항제4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3.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허용(안 제83조제4항제1호및제2호)

####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제83조는 단기자금 대여 등을 제외하고는 공모펀드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허용 필요
  - \* 다양한 재무상황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자금지원방식이 유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BDC도입례에서도 대출 허용
  - \*\*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설립 대주주는 지분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음 (→기업성장 및 IPO 등에 따른 성과를 최대한 향유 의사)

####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가능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30일 이내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 4.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안 제183조제1항)

##### 가. 개정 이유

-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 현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기업성장’을 추가할 필요

##### 나. 개정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기업성장”을 추가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기반 마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 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5.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정의 등(안 제229조제6호)

### 가. 개정 이유

- 여타 공모펀드와 같이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방법을 핵심요소로 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정의 (제도 도입)

###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 ①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예: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 ② 주권비상장법인, 그 밖에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 \* 예시: ①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② 시가총액 2천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③ 既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②,③의 경우 펀드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 ③ 증권취득, 금전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명확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권비상장법인, 그 밖에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이하 “주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취득, 금전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다만,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정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상장유예기간 허용(안 제230조제3항)

###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설립되도록 하되 투자자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하여 **90일 이내 상장 의무**(안 §234의3 ①)
  - \*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수익성 확보에 필수적
- 다만,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등 **상장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나. 개정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상장 유예**를 허용
  - \* (예) 최초 설정·설립시 운용사 및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립·설정된 경우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상장유예를 허용하여 **운용실적(Track record)**를 축적할 수 있는 기간 부여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② (생략)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급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요건 관련(안 제234조의3제1항 제1호내지제4호)

### 가. 개정 이유

- 벤처·중소기업 등에 장기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특성에 부합하는 설정·설립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

### 나. 개정 내용

- (설립형태) 벤처·중소기업에 장기투자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형 기구로 설정·설립 하도록 규정
- (존속기간) 장기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5년의 최소 존속 기간을 두고, 최장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예: 20년)
- (의무출자) 운용사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의무출자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의무보유하도록 규정
- (최소 설립규모) 기구의 최소 설립규모는 50억원 이상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예: 200억원) 이상이 되도록 규정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요건 구체화를 통해 도입 기반 마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제234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또는 설립할 것
2. 최소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것.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각각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발행(이미 설정 또는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설정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할 것
4. 모집가액이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소 모집가액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8.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인가요건(안 제234조의3제2항)

###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인가요건을 구체화할 필요

###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신규인가를 받도록 하되,
  - 대주주요건에 대해서는 **변경인가시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
- \* VC등 벤처투자에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있는 자의 원활한 진입 지원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인가요건을 구체화하여 도입 기반 마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5. (생략)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 제234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12조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⑤ (생략)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4.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별표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계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9.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펀드 운용규제 배제(안 제234조의3제3항)

###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여타 공모펀드와 투자특성이 다른만큼, 별도의 운용규제 적용 필요

###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통상의 운용규제(제81조) 적용을 원칙적 배제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공모펀드 주요 운용규제 개요(제 81조 관련)
  - 동일 종목 분산투자 조항(10% Rule)
  - 지배금지 및 분산투자 조항 (10%, 20% Rule)
  - 계열사 발행증권 취득 제한(영§86)

※ 참고 조문

「자본시장법」

제234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③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관련(안 제234조의3제4항)

### 가. 개정 이유

- 법 제81조상의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배제하되(안§234조의3③)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운용규제 구체화**

### 나. 개정 내용

-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유예를 허용
- 동일 법인(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집중 투자한도는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제한
- 동일 법인(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비율을 피투자기업 지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금지
-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투자하도록 의무화
- 여유자산으로 부동산 투자 및 그에 준하는 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특성에 부합하는 운용규제를 구체화하여 제도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 제234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④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제229조제6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합투자재산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제229조제6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행위
3.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4. 집합투자재산 중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4호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와 제229조제6호에 따라 인정되는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 1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기타규제 관련(안 제234조의3제5항)

### 가.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의 설정·설립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규제 구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 제234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을 포함한다)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포함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제재 관련(안 제444조제19조의2및제13호 및별표1)

### 가. 개정 이유

- 일반 공모펀드의 운용규제와 별도로 정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안 §234조의3)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 마련

### 나. 개정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한 처분이나 영업취소의 제재와 형사벌 등이 가능하도록 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 운용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성장집합업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일반 공모펀드 운용규제 위반(제81조제1항)시 제재사항
  -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420①제6호 및 [별표 1])
  - 임직원 등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주의 등(§422① 및 [별표 1])
  - 형사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444제9호)

## ※ 참고 조문

###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생략)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 제2항 관련)

90. 제81조제1항, 제83조 또는 제84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231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4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의2.~19. (생략)

19의2. 제23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